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5.

제안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를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에 관한 조문에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수정 및 안 제15조의3 삭제).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15조의2의 제목 중 “청년”을 “청년 및 인구감소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청년”을 “청년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”로 한다.

안 제15조의3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5조의2(<u>청년</u> 1인 창조기업의 우대)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에 대하 여 <u>청년</u> 1인 창조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.	제15조의2(<u>청년</u> 1인 창조기업의 우대) (현행과 같음)	제15조의2(<u>청년</u> 및 <u>인구감소지역</u> 1인 창조기업의 우대) 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청년</u> 및 「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12 호에 따른 인구감 소지역의----- -----.
<신 설>	제15조의3(<u>인구감소 지역</u> 우대) 정부는 <u>제9조부터 제15조 까지에서</u>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<u>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 구감소지역의 1인</u>	<삭 제>

	<u>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.</u>	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4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이만희 · 임종득
최형두 · 백종현 · 박성훈
김소희 · 최수진 · 박준태
김 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,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,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5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의 제목 중 “청년”을 “청년 및 인구감소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청년”을 “청년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<u>청년</u> 1인 창조기업의 우대)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 하여 <u>청년</u> 1인 창조기업을 우 대할 수 있다.	제15조의2(<u>청년 및 인구감소지역</u> 1인 창조기업의 우대) ----- ----- ----- <u>청년</u>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1 <u>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</u> --- -----.